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13.)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4(2020.8.18.)
-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5(2020.8.18.)
-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7(2020.8.18.)
-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
- 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9(2020.8.18.)
- 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50(2020.8.18.)
-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36(2020.8.28.)
- 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60(2020.8.28.)
- 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61(2020.8.28.)
-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961(2020.9.4.)

2. 지난 8.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이 9.13일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근거 ‘가~자, 타’ 는 그 조치 기간을 9.27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관련근거 ‘차~타’ 는 방역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9.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카페

- 적용 대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 적용 대상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학원·체육시설 등

- 적용 대상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2.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3.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주무관	강재희	행정사무관	이성경	생활방역팀장	김정숙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	이기일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	강도태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부장	박능후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880** 접수 비상안전기획관-4674 (2020. 9. 13.)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2 팩스번호 044-202-1971 / jaehuekang@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